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96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72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	3

I. 제안경위

【김선교의원안】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3.
3. 회부연월일 : 2025. 3. 14.

【윤준병의원안】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선교의원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윤준병의원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선교의원안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을 연장하려는 것이고, 윤준병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 행	김선교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25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28년</u> ----- -----.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30년</u> ----- -----.

현재 우리나라는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각 개별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3~5세 대상 누리과정²⁾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3세 이상인 유아의 유치원 원비 등은 교육세로, 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국고(교육부)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구조임.³⁾

④ ~ ⑤ (생략)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2) 누리과정은 3~5세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임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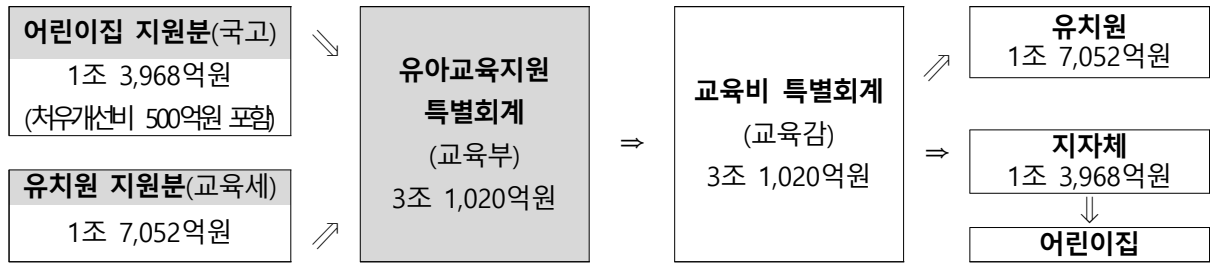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구조(2025년)】



자료: 교육부

【'25년도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단가(월)】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만원	28만원	28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7만원	7만원
계	15만원	35만원	35만원

자료: 교육부

참고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배경을 살펴보면 정부가 2012년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이후 이를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은 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에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 당시에는 부칙에서 이 법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및 2022년에 유효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이에 개정안들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추진 과정 중에 있어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됨.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4)은 누리과정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④ (생략)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 ③ (생략)

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5)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25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에는 누리과정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은 그동안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로 부담하던 부분이 아닌 만큼 보통교부금의 증액 없이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논의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개정안들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기한과 관련하여 김선교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을, 윤준병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연장기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5.>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19.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은 1인당 추가 지원 금액에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곱하여 산정한다.

아울러,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⁶⁾에 따르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교육부 국고로 이원화된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계획 중으로, 정부는 현행 교육부 소관 국고 일부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합한 ‘영유아특별회계(가칭)’ 신설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겠음.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영유아특별회계(가칭)’ 신설이 진행 중이므로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6)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3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2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비용지원구조 개편) ①기관 유형, ②수요자 선택권, ③기관 자율성 ④서비스 질 제고를 고려하여, 통합기관 유형별 지원구조 개편 검토 ※ (現유치원) 기관 유형에 따라 비용지원구조 설계 (現어린이집)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①인건비 지원유무, ②연령(0~2세, 3~5세)에 따라 설계 - 통합기관 유형별 비용지원구조 및 항목 설계 및 관련 법령 및 제도·지침 마련 ※ 기관 현황 지역별 인구 추계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 효율적 지원구조 방안 마련 ○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과정에서 누수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통합적 재정기반 마련 필요 -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이원화 구조(유아교육특별회계*, 복지부 국고)의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 취학직전 3년의 유아(3~5세)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25.12월 종료 예정) -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회계 법안 마련 및 관계기관, 국회 등과 협의·소통 및 법안 통과 추진(24.下)	